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기업경제과장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제정이유

- 고령군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련법에 따른 산업단지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및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(안 제2조)

-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
 - 「산업집적법」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
 - 같은 법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
- 위탁할 수 있는 업무 : 별표1 참조
 - 입주계약 체결 및 해지
 -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
 - 입주기업체 지원 및 지도
 - 공공시설 관리 등

나. 위탁운영 및 시설물 관리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지도·감독 및 위탁의 해지(안 제5조 ~ 제6조)

3. 제정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- 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산업단지관리공단 등)
 -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21. 4. 26.~2021. 5. 15. 기간 중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3) 성별 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4) 비용추계 분석 : 해당없음
- 5)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 통과 (2021. 5. 24.)

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령군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리위탁) ① 고령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

2.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

②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고령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, 위탁기간, 위탁받은 자의 의무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.

④ 군수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3조(운영) ① 위탁받은 자는 위탁 받은 업무를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.

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③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.

제4조(시설물 관리) ①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·증축·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군수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,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,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할 부분을 발견하면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탁의 해지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위탁받은 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
2.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

3.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

4. 위탁받은 기관이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

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와 「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산업단지 위탁업무(제2조제2항 관련)

【근거법령 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】

구 분	위탁업무	근 거
행정(민원) 업무	· 입주(변경)계약 체결 및 해지 등	법 제38조, 제42조
	·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 신고	법 제38조의2
	·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신청·신고	법 제39조
	·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	법 제15조, 제16조
	·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관련	법 제40조
관리기본 계획수립	·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(변경에 한함)	법 제33조
입주기업체 지원	·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 · 교육·연수사업 ·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	법 제44조
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	·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· 산업단지 환경관리 등	법 제45조 시행령 제5조
공공시설 관리	· 산업단지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· 산업단지 도로, 공원 등의 환경정비 ·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· 관리청사 유지관리	시행령 제5조
산업단지구조 고도화 등	·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·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· 산업단지 간 연계활성화 사업 · 산업단지 정비사업 ·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	법 제45조의 2 시행령 제5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업경제과	
연 락 처	054-950-6713